여성연구 The Women's Studies 2022. Vol. 113 No. 2 pp. 229~252 http://dx.doi.org/tws.2022.113.2.008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에 대한 시론* -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의 성착취 목적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¹⁾을 소재로 -

장응혁**•정진성***

초 록

2021. 4.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 피의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가 인권침해였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 및 방식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년에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경찰청장 등에게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지표는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 규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실무상 활용되기가 어렵고 형법상 인신매매죄 자체도 규정이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에서는 자국법인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을 반영한 식별 도구 및 인신매매 지표를 피해자 유형별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 수립을 위하여 형법이 아니라 성매매처 벌법 및 인신매매방지법상의 다양한 규정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각 규정별로 장단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매매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인신매매, 성매매, 피해자, 식별기준, 인신매매방지법

^{*} 본고는 필자가 작성한 2021년 경찰청 연구용역 보고서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한 피해자 식별 기준 제시"의 일부를 발췌, 대폭적으로 수정한 것임.

^{**} 제1저자: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jjang160@kmu.ac.kr)

^{***} 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cis2047@sch.ac.kr)

¹⁾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에서도 성인과 아동·청소년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성인만을 대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I. 들어가며

2021. 4. 12. 국가인권위원회(2021b)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추락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이주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사고 당일 다인실 병실에서 실시되었으며 신뢰관계인 동석과 영사기관원과의 접견·교통에 대한 권리고지 절차가 준수되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성매매 단속 및 수사는 다른 범죄의 단속 및 수사에 비해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기 쉽다.

그런데 성매매 단속 및 수사에 있어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인권침해 외에도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다른 성매매 관련자들과 달리) 성 판매자는 처벌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성매매피해자로서 보호 및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례에서 이주여성은 태국에서 에이전시로부터 허위의 근로정보를 제공받고 한국에 입국하였으며, 여권을 빼앗긴 채 성매매를 했었는데 국가인권위원회(2021b)는 인신매매 피해 정황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사과정에서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식별절차·방식 및 보호조치 등 관련 규정 및 매뉴얼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일선 경찰관서에 전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따라서 경찰은 앞으로 범죄의 근절이라는 목표와 함께 피해자 보호라는 목 표를 동시에 달성하여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인신매매 피해 자 식별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이 활용할 수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작성하여 활용을 권고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우선 검토해야 할 것이다(Ⅱ). 그리고 인신매매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도 대응하고 있으므로 특히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과 그 활용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Ⅲ).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유용한 식별기준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Ⅳ).

Ⅱ.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관련 법률과 국가인권위원회의식별기준

1.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관련 법률

2013년 형법에 인신매매죄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형법 제289조의 죄명이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에서 '인신매매'로 바뀌었으며 목적 없이 사람을 매매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이 제1항으로 신설되었으며 다른 약취, 유인죄의 목적도 기존에는 추행, 간음, 결혼, 영리, 국외이송만을 규정하다가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 등을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종래 방조범 형태로 처벌되던 약취, 유인 등을 위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하는 행위를 독자적인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형법이 개정된 것은 입법의 필요성이 절실했었기 때문이라기보다 국 제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즉 "2000년 12월 13일 우리나라가 서명한 「국제 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및 「인신매매방지의정서²)」의 국내적 이행을 위한 입법으로서, 협약 및 의정서상의 입법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행위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범죄단체나 집단의 수 입원으로 흔히 사용되는 도박장소의 개설이나 복표발매에 대한 처벌규정의 법 정형을 상향하고, 각종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죄를 신설하여 인신매매의 처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조직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척결하는 동시에 국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신설된 인신매매죄는 2014년 3건, 2015년 6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2019년 3건 적용되는데 불과하여 다른 처벌규정와 달리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도 최근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이라 한다)' 제정 과정에서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고려해 인신매매 관련 범죄에 관한 수사 및 재판 실무와 사례 분석을 통해 수사기관의 관심 부족, 범죄 입증 미흡, 낮은 선고형 등

^{2) 2000}년 10월 채택된 국제연합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보충 의정서들 중 하나로 정식명 칭은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이하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라고 한다)이다. 상세한 내용은 외교부 사이트를 통해 영문 및 한글 전문 (https://www.mofa.go.kr/www/wpge/m_3835/contents.do에서 2022. 1. 13. 인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태를 파악한 후 처벌규정의 별도 도입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차인순, 2021. 4: 65).

이렇게 처벌규정의 별도 도입이 논의되는 이유로는 우리 형법이 유엔 인신 매매방지의정서 등과는 달리 인신매매를 '매매'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의 개념도 좁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대법 원3)은 인신매매죄 이전에 존재하였던 부녀매매죄에서 "부녀매매죄가 성립하려면 매도인이 매매 당시 부녀자를 실력으로 지배하고 있었는가 여부 즉 계속된 협박이나 명시적 혹은 묵시적인 폭행의 위협 등의 험악한 분위기로 인하여보통의 부녀자라면 법질서에 보호를 호소하기를 단념할 정도의 상태에서 그신체에 대한 인계인수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판시하여 매매를 협소하게 판단하였다.

2.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와 문제점

1)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6. 6. 20.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를 만들어 법무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경찰청장, 각 광역지방자 치단체의 장에게 활용을 권고하였다.

이 지표는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제3조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인신 매매 일반적 지표 등을 참고한 것으로 식별 지표는 인신매매의 3요소인 행위, 수단, 목적에 따라 지표를 분류하고, 상호 연계된 지표를 통해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인데 〈표 1〉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요소	내용	및 세부 구분	구분 기준	기타
행위(4)	모집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5개 행위 요소 중 운송과 이전을 이동으로 통합	행위 요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한 후, 수단을 판단함
	이동			
	은닉			
	인계			.,
수단(3)	위계	협박·무력 강제 납치	협박, 강제, 납치, 사기, 기만을 당했는지, 혹은 권력의 남용 및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의 이용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표 1〉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의 구성

³⁾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요소	내용 및 세부 구분		구분 기준	기타
	위력	사기 기만		
	그 밖의 수단	권력 남용 취약성 이용 지배관리	수단을 통합함	
목적(20)	경	제적 통제(2)		
	물리적 통제(5)		확실성 항목으로 1개 이상일 경우 착취로 판단	
	정서적 통제(1)			
	경제적 통제(2)			
	물리적 통제(3)		개연성·가능성 항목으로 2개 이상일 경우 착취로 판단	
	정서적 통제(6)			
	기타(1)			

자료: 국가인권위원회(2016. 6. 20),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3-6면을 재구성.

2) 식별 지표의 문제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식별 지표는 비록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인신매매죄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형법상 인신매매죄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상 인신매매의 내용 가운데 일부만을 수용하였기에⁴⁾ 식별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를 "착취를 목적으로 협박이나 무력의 행사 혹은 다른 형태의 강제,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 남용이나 취약한 지위의 이용, 또는 타인에 대한 통제력을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보수나 이익의 제공이나 수락행위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 운송, 이전, 은닉 혹은 인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고 이에 따라 식별지표를 작성한 것이다.

이는 해외에서의 비판 등을 반영한 것으로 UN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5년 우리나라에 "인신매매의 정의를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국가인권위원회, 2016a:2) 2020년 5월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도 우리나라에 "의정서에 제시된 정의에 부합하도록 모든형태의 인신매매를 불법으로 명시하고, 성적 인신매매의 경우 다른 중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규정하는 등 충분히 엄격한 처벌을 명시한 포괄적인 인신매매금지법을 제정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3).

그러나 현행법과 식별 지표 사이의 차이는 결국 현장에서 식별 지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는 상황을 발생시키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⁴⁾ 정도희(2019:221)은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상 인신매매를 (초국가적) 인신매매, (광의의) 인신매매로, 형법상 인신매매를 (협의의) 인신매매로 구분하고 있다.

범위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식별 지표는 착취 행위가 아니라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이동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인신매매로 정의하고 있다. 즉 식별 지표는 일정한 착취의 '목적'이 존재해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수단'을 이용하여 다양한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에 인신매매가 성립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인신매매의 실제 행태가매우 복잡할 뿐만 아니라 행위 태양에 가담하는 유형이 광범위하다는 점에서기인한 것이지만 매매라는 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형법과는 매우 이질적이다(박찬걸, 2021:169). 나아가 식별지표는 착취를 목적으로 규정된 수단이 사용된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문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5) 형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살펴보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자국의 형법에 부합하는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Ⅲ.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률과 보건복지부의 식별 기준

1. 미국의 인신매매 관련 법률

국가인권위원회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지표는 특히 성과 노동 착취에 중점을 두었는데⁶⁾ 이러한 점은 미국과 유사하다. 사실 인신매매 관련 법률은 나라마다 크게 다른데 이는 인신매매를 독립한 유형의 범죄로 규제하기 시작한 것이 세계적으로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며 관련 법이 정비되게 된 경위도 각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크게는 ① 노동의 착취, ② 성범죄, ③ 신체의

⁵⁾ 인신매매의정서도 성인의 경우 의정서 제3조(a)에 규정된 수단 중 어떠한 것이든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동의의 진정성을 부정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에 있어서는 동원된 수단과 관계없이 동의의 유효성을 부정하고 있다.

⁶⁾ 유엔 인신매매의정서는 5개의 착취를 다루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현실적 필요에 따라 성과 노동 착취에만 중점을 두었다. 김종철·최민영(2021)는 우리나라에서 문제되는 대표적 유형으로 ① 연예흥행 비자(E-6)을 통해 성산업에 유입된 이주 여성들, ②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들, ③ 국제결혼을 통해 강제노동 및 성착취에 노출되어 있는 결혼이주 여성들, ④ 채무노예로 강제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는 국내 여성들, ⑤ 성관광 목적으로 인신매매된 아동과 여성들, ⑥ 부실한 입양 시스템으로 인해 착취되고 있는 아동들을 들고 있는데 대부분 성매매와 관련된다.

자유에 대한 죄의 세 가지 형태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7)

미국은 유엔이 2000년 채택한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초안을 제출한 나라로 동년에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처음에 노동착취를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이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노예노동에 대한 문제가 심각했던 점을 반영한 것인데 동법은 인신매매를 현대판 노예제도로 보고 있다.

다만 2008년 개정으로 성적 목적 인신매매에 대해 성인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의 증명, 아동피해자의 연령 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 등의 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미국시민이 아닌 외국인의 경우 주로 노동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반해 미국시민은 주로 성적 목적의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은 인신매매를 '기본 형태의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 (sex trafficking)'와 '중한 형태의 인신매매(severe forms of trafficking in persons)'로 구별하고 규정하고 있다. 기본 형태의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는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사람의 모집, 은닉, 운송, 공급, 인수"로 정의되고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103(9)), 중한 형태의 인신매매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정의되는데(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 §103(8)), (A)는 성매매 등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B)는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이다.

- (A) 물리력,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sex trafficking 또는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sex trafficking
- (B) 비자발적 인신예속, 채무노역, 채무예속, 노예상태 등에 처하게 할 목적으로 노동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물리력, 사기, 또는 강요에 의하여 사람을 모집, 은닉, 운송, 공급, 인수하는 것

미연방법은 '중한 형태의 인신매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⁸⁾ (A)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중 물리력, 사기, 또는 강요가 사용된 경우나 피해자가 14세 미만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5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가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

⁷⁾ 木村光江(2006:41)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죄는 신체의 구속과 금전의 이동이 있으면 적용이 가능하지만 노동의 착취나 매춘의 경우 적용범위가 한정될 뿐만 아니라 실제 적 용에 있어서도 목적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⁸⁾ 미연방법은 '기본 형태의 성 착취 목적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다(18 U.S.C. §1591). (B)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2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8 U.S.C. §1590).

이렇게 인신매매를 유형별로 나누어 처벌하고 있고 인신매매 피해자도 유형 별로 나누어 보호하며 여기에 사용되는 식별기준도 다르다. 다만 이하에서는 성인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연방정부 보건복지부의 식별기준 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2. 미국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

1) 성인 인신매매 식별 도구 및 지침서

미연방정부의 보건복지부(HHS: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인신매매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센터(NHTTAC: National Human Trafficking Training and Technical Assistance Center)"에서는 2018년 1월 보건 및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인신매매 피해자 또는 피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성인 인신매매 식별도구 및 지침서(AHTST: Adult Human Trafficking Screening Tool and Guide)」를 제작·배포하였다. 이 도구 및 지침서(이하 '프로토콜'이라 한다)의 특징은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서 집중하고 있는 피해자 식별 목적은 물론 그외에도 피해자와 가족이 당면한 건강, 복지, 교육, 지역사회 정착 등 다양한 니즈(needs)를 어떻게 파악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했다는 점이다(HHS, 2018:4).

2) 성인 인신매매 식별 도구와 지표

먼저, 프로토콜의 성인 인신매매 식별 도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이 여덟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인신매매를 비롯하여 가정폭력, 성폭력, 에이즈 등 다양한 분야의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효과성이 입증된 식별 도구들을 종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문항들은 가급적 짧고, 덜 공격적이며, 예/아니오/모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폐쇄형 질문으로설계되었다.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인신매매의 세 가지 핵심 수단인 '물리력, 사기, 강요'를 포함하고 있고, 아울러 피해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경험한 다른 수단 이나 행태들도 담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모집 방식, 신분증이나 여행증 명서 관리, 폭력·강요·위협 사용, 작업환경, 거주환경 등과 관련된 전형적인 상황을 포함하고 있다(HHS, 2018:5-15).

이 도구는 노동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와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를 모두 식별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포함시킨 것이다. 만약 한 가지 질문에라도 '예'라고 대답하면 인신매매 피해자이거나 피해 위험에 처해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나 피해 자 보호·지원 기관 등 관련 기관에 연락해야 한다. 이를 돕기 위해 미연방정부 는 "전국 인신매매 핫라인(National Human Trafficking Hotline: 1-888-373-7888)"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200여개의 언어로 휴일 없이 매일 24시간 서비스되고 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도구가 인신매매의 피해자이거나 피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도구일 뿐, 심리치료 등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와 는 별개라는 것이다(HHS, 2018:15-17).

〈표 2〉성인 인신매매 식별 도구

질문: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거나, 현재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있나요?	답변	노트
1. (때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사실과 다른 직업(일)을 받아들이게 한다. 그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직업(일)을 할 수밖에 없거나 그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2. (때로) 교통수단, 거주지, 돈 등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제공한 사람에게 그 비용을 갚으려고 노력한다. 만약 빚 때문에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 면 다른 일을 하라고 요구받는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3. (때로) 만약 거절하면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당 또는 위험한 일을 하거나 그러한 부당하고 위험한 상황을 감 수하고 있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4. (때로) 자신의 신분증이나 여행증명서를 직접 소지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5. (때로) 가족과 연락하지 못하게 하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게 하거나, 가고 싶은 곳을 원할 때 못가게 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거나 그런 사람과 시간을 보낸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6. (때로) 일하는 곳 또는 관리자가 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허락 없이 살 수 없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질문: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했거나, 현재 그럴 수도 있는 상황에 있나요?	답변	노트
7. (때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한 자신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도록 요구받는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8. (때로) 다른 사람을 위해 돈을 벌거나 빚을 갚으라는 이유로 자신이 상해 를 입거나 협박당한다. 또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협박당하거나, 자 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강요된다.	예 아니오 답변거절 모름	

자료: HHS, Adult Human Trafficking Screening Tool and Guide, 2018, Table 2. 16-17면.

NHTTAC의 프로토콜은 성인 인신매매 식별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소위 '레드플래그(red flags)'라고 불리는 "인신매매 지표(Indicators of Trafficking)"를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프로토콜에는 〈표 3〉과 같은 레드플래그 체크리스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식별도구는 아니지만,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감정적, 행태적, 신체적 사인(증상)을 찾아내 본격적인 인신매매 식별과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실증연구들은 식별 효과와 장단점에 대해 다양한 찬반 논란을 제기하지만, NHTTAC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신매매 지표(레드플래그 체크리스트)가 식별 도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표 3〉은 특별히 '성인'에 해당되는 지표들을 엄선한 것이다(HHS, 2018:4-11).

〈표 3〉 인신매매 지표

인신매매 지표 노동력 착취 또는 성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위험에 처한 성인들

물리력 / 사기 / 강요를 보여주는 지표

- 누군가 자신을 대신해 말한다.
- 날짜나 요일을 모른다.
- 자주 이동한다.
- 신분증을 통제하지 못한다.
- 어디 사는지 모른다.
- 자연스럽지 않거나 조작된 듯한 이야기를 한다.
-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
- •계속 같은 옷을 입고 있다.

- 질문에 답하기를 두려워한다.
- 장시간 일을 하거나; 지쳐있거나; 굶주려있다.
- 자기 돈을 다른 사람이 통제한다.
- 거주지나 일하는 곳이 수상하다(예시: 창문이 어둡게 처리됨, 보안카메라가 있음, 철조망이 있음, 일하는 곳에서 숙식함 등)
-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있다.
- 고용주에게 빚이 있다.

노동력 착취 인신매매 지표	성 착취 인신매매 지표
거짓 약속에 속아 다른 직업(일)을 하고 있음 고용주나 감독자를 두려워하고 있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 있음: 일을 그만두면 가족에 해가 될까 두려워함 일하는 곳에서 살고 있음: 살 장소를 선택할 수 없음 고용주에게 빚이 있는데 갚기가 어려움 비정상적인 노동 시간: 휴식시간이나 휴가가 없음 상사가 자신의 직업(일)에 대해 거짓말하도록 시킴 비좁은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음: 집사, 관리인, 가사도우미 등	• 상업목적의 성 산업계에서 일하고 있음: 에로 틱 댄스, "매춘", "마사지" 등 • 많은 사람들과 성관계를 맺고 있음 • 포주(뚜쟁이)가 있음: 남성, 여성, 남자친구, 남편 등 • 문신이나 누군가의 소유라는 표식이 있음 • 성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함 • 장소나 날씨에 걸맞지 않은 이상한 옷을 입고 있음 • 물리적 학대, 마약/알코올, 영양실조 등을 겪고 있음

자료: HHS, Adult Human Trafficking Screening Tool and Guide, 2018, Appendix B. 31면.

3) 피해자 식별의 전체적인 과정

마지막으로 NHTTAC의 프로토콜이 제시하고 있는 피해자 식별의 전체적 인 과정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과정

라포 (친밀감) 형성	식별도구를 사용하기 전에 대상자와 친밀감을 형성하라. 딱히 정해진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요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위협적이지 않은 자세(눈높이) •눈맞춤, 표정, 바디랭귀지 •경청하는 기술 •존중하고, 공감하고, 평가하지 않는(선입견 없는) 소통방식
	최적실무를 위한 교육훈련
	• 전문가(담당자)가 대상자의 입장이 되어보는 역할극(role play)을 통해 어떻게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민감한 부분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갈지 연습하라.
레드 플래그 확인	인신매매의 위험요인과 레드플래그(사인이나 증상)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아라. 이에는 신체적, 감정적, 행태적 지표와 학대나 통제의 흔적이 포함된다. 인신 매매가 의심되면 프라이버시(신병)를 확보하고 식별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라.
	최적실무를 위한 교육훈련 • 크고 작은 다양한 그룹 토의를 통해 레드플래그에 대해 논의하고 각자의 실무 경험을 공유하라. • 레드플래그가 될 만한 다양한 지표들을 워크시트로 만들어서 무엇이 레드플래그에 해당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구별하는 법을 연습하라.
프라이 버시 (신병)	대상자와 같이 온 동반자(잠재적 가해자)를 분리시키는 과정은 매우 주의를 요한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각 기 관/조직의 접수과정(intake process)을 점검해서 동반자가 의심하지 않게 대상자를 분리시킬 행정 절차를 정해놓아라. 최적실무를 위한 교육훈련
확보	의식글무글 귀한 교육문년 •소규모의 그룹 활동을 통해 각자가 속한 기관/조직의 접수 과정을 점검하고 분리

	전략이 있는지 확인하라. 또한 분리전략에 개선이 필요한지 토의하라. • 대상자의 프라이버시(신병) 확보에 관한 연구결과를 확인하고 어떤 방식이 효과적 인지 공유하라.
피해자 (위험) 식별	식별하는 과정은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트라우마와 같은 충격을 받은 사람을 다루듯 세심하게 하라. 접수 단계 이전에, 특히 식별 과정에서는 반드시 대상자에게 비밀유지(confidentiality)에 관한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동시에 그 권리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과 같이 식별하는 목적에 따라 전문가 자신의 업무(역할)에도 한계도 있
	이물니, 다음과 끝에 작물이는 목적에 따다 전문가 자신의 납구(작물)에도 전계로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만약 자신이 단순히 식별만 하고 위험성이 드러날 경우 다른 전문가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라면, 식별도구의 (여덟 가지) 문항들을 쓰여진 그대로 질문하라.
	• 만약 자신이 위험성 발견 후 계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동기강화상담 (motivational interviewing) 기법을 활용하여 더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가라. 이 를 통해 인신매매피해 여부를 확인하거나, 피해 정도를 평가하거나, 안전확보 전략 을 모색하거나, 파악된 니즈를 바탕으로 가용 서비스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최적실무를 위한 교육훈련 •역할극을 통해 동기강화상담과 같은 상담 기법을 연마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
	• 비밀유지 권리 및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 그에 따라 어떤 질문은 가능하고 어떤 질문은 해선 안 되는지 토의하라.
	•상담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접수 과정에서 어떤 질문은 가능하고 어떤 질문은 해선 안 되는지 구별하도록 훈련하라.
	• 비록 동의하기 어려운 경우라 해도, 대상자에게 질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권리가 있음을 존중하라.
신고 필요성	식별을 마친 다음 인신매매가 의심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할 사안인지 확인하라. 이때 대상자에게 담당자가 왜 신고해야 하는지를 위협적이지 않게 설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는 친밀감(라포)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또한 대상자가 걱정하는 이유를 세심하게 공감해주고, 신고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혜택과 이후의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적실무를 위한 교육훈련 •성인 인신매매를 신고할 때 필수사항, 의무신고사안이 되기 위한 요건, 그리고 신
논의	고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토의에 참여시켜라. •소규모의 그룹 활동을 통해 대상자에게 신고의 필요성을 알리는 적절한 방법을 연
	소마고의 그룹 들당을 당해 대당자에게 인고의 필요성을 할다는 역을한 영합을 한습하도록 하라. • 온라인에서 상담 비디오를 찾아서 신고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을 본 다음 무엇이 잘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를 비판해보라.
가용 서비스 안내	인신매매가 의심될 경우,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가용 서비스들을 잘 안내하라. 이때 담당자가 속한 기관/조직에 국한시키지 말고 외부의 가용 서비스들도 함께 안내해서 이후의 사건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최적실무를 위한 교육훈련 • 담당자에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서비스 목록을 제공하라. • 담당자로 하여금 자신이 속한 기관/조직과 지역사회에 어떤 가용 서비스가 있는지 찾아보게 하라.
	• 기관/조직 간 교차 훈련을 장려해야 한다. 아울러 대상자가 추가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할 때 친절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프로토콜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Ⅳ. 새로운 인신매매 식별기준의 모색

1. 새로운 기준 모색의 방향성

미국의 경우 자국의 법률로 규정한 인신매매의 정의에 따라 식별 도구를 피해자의 유형별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인신매매 지표를 만들어 체계적인 절차 내에서 같이 활용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단순히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등을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현행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기에》 현장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부합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별도로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형법상 인신매매죄의 규정 및 해석이 아주 제한적이므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더구나 인신매매 피해자가 종사하게 되는 다양한 활동이 처벌의 대상이 되며 특히 성매매 영역에서는 그러한 처벌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더욱 쉽지 않다.10) 즉 우리나라의 경우 자발적 성인 성판매자가 모두 처벌의 대상이고 자발적 아동·청소년 성판매자도 과거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인신매매 피해자는 혹시 모를 처벌을 두려워해 피해자라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던 것이다.11) 또한 성매매의 경우 주로 단속을 통해 성판매자가 경찰과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라는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힐 수 있게 하는 라포 등이형성되기 어려웠다.

여기에 언론 등도 성매매 내지 유흥접객 등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측면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러한 결과에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인 인신매매 과 정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박찬걸, 2021:153).

⁹⁾ 인신매매에 활용된 8가지 수단 요소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정의 규정인 ① 위력, ② 위계,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통합하고는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6. 20:4).

¹⁰⁾ 이는 해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미국에서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성매매 등에 관여하는 경우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범죄자로 체포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¹¹⁾ 이러한 문제는 일찍부터 지적되어 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당시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즉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이다. 관련된 내용은 2003. 7. 1. 열린 제16대국회 제240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1-30면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러나 인신매매에 있어서 가장 전형적인 분야가 성매매이며 형법상 인신매 매죄와 달리 우리 법제는 성매매 관련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식별기준을 수립하는데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우선 성인인 성판매자 관련해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이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매매피해자도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하는 등 전형적인 인신매매 피해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우선은 이를 기준으로 인신매매피해자 식별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성매매처벌법의 활용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더 나아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라목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4년 제정된 성매매처벌법이 성매매피해자 개념을 도입하면서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도입하였지만 형법의 인신매매죄 신설로 인해 처벌규정이 삭제된 것이다.

다만 신설된 형법의 인신매매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매매처벌법에 다른 규정들은 남아 있고 특히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을 성매매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12) 이러한 강요는 성매매를 시작한 초기에 존재하

지 않더라도 인정되고 있으며13) 헌법재판소도 최근 '위력'을 기준으로 성매매 피해자를 판단하였다. 즉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 없이 성매매 혐의를 인정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14)에서 피해자가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하였다고 본 것이다.

과거와 달리 위계 및 위력의 개념이 성폭력범죄 분야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논의되며 점점 더 인정되는 범위도 넓어지고 있으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 법'의 해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인신매매죄를 대신하여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는 효과적 기준이 될 수 있다.

오히려 문제는 기존의 논의들이 준하는 방법을 너무 넓게 해석하였던 것인데 어디까지나 위계 및 위력에 '준'하는 방법이므로 불법성이 인정되는 모든수단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다. 15) 즉 성매매 알선업자가 단순히 개입한 경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수치심을 야기하는 수준에 이르는 적극적인 호객행위나 광고행위 정도에 미치지 않는 권유나 유인행위 등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다. 16)

더 나아가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처벌규정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성매매 강요나 감금 등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윤덕경·장미혜·박선영, 2013:42-43)을 고려하면 오히려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강요죄의 피해자가 인신매매피해자의 가장 현실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

특히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제2호는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¹²⁾ 이외에도 제2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 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다목은 "청소 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사람"을 성매매피 해자로 규정하고 있다.

¹³⁾ 다만 이덕인(2008:176)은 피해자화가 대가성 성행위에 유입되는 상황에서의 강제성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성행위를 하면서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피해자화가 아니라 는 것이다.

¹⁴⁾ 헌법재판소 2020. 9. 24. 선고 2018헌마1224 전원재판부 결정.

¹⁵⁾ 조국(2015:475)도 성매매의 강요·유인·알선 행위는 타인의 의사결정을 침해하여 성매 매를 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타인의 의사결정에 대한 침해가 없거나 경미한 '권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하고 있다.

¹⁶⁾ 다만 박찬걸(2012: 326-327)은 성매매행위를 비범죄화하는 것을 전제로 처벌을 반대 하고 있다.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여 다른 성매매 알선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18조 제1항 제2호가 성매매피해자를 규정한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과 달리 수단으로 위력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지적되고 있으나 동 규정에는 '이에 준하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력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며 오히려 문제는 폭행, 협박 및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를 너무 좁게 해석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노동력착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3. 향후의 과제: 인신매매방지법의 활용

국회는 2021. 4. 20. 인신매매방지법을 통과시켰고 동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 법안은 우리나라가 2015. 5. 29. 비준하여 동년 12. 5. 효력이 발생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이행법률로써 의의를 지니는데, ① '인신매매등'의 개념을 정의하고, ② 개별법상 인신매매 등 관련 범죄를 통합하여 '인신매매등범죄'임을 명시하는 동시에, ③ 피해자 보호·지원 규정 및 수사·재판 절차상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국회, 2021. 3. 17).

더 나아가 인신매매방지법 제3조는 적용 대상 인신매매등피해자도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①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으로서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 ②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 ③ 인신매매등 피해를 입은 사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다.17)

따라서 인신매매등의 개념이 우선 중요한데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으로 다음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아동·청소년(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제외한 사람에 대해서는 ①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

¹⁷⁾ 피해자군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져 제도적·재정적 부담이 우려된다는 점에 따라 법안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법률 적용대상 범위를 설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사람을 모집한 것을 인신매매에 포함할 경우 국내 불법체류자(약 40여만명)이 대부분 인신매매·착취 피해자로 포설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차인순, 2021. 2:5).

감금, 약취·유인·매매하는 행위, ②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¹⁸⁾, ③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신매매등이 다음의 범죄에 해당할 때 '인신매매등범죄'가 되다.19)

- 가. 「형법」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제 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 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치사), 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 제294조(미수범) 및 제296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3조(미수범)의 죄(같은 법 제18조의 미수범에 한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부터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까지의 죄
- 라. 「청소년 보호법」제55조부터 제57조까지의 죄
- 마. 「아동복지법」제71조제1항제1호, 제2호(같은 법 제17조제7호 및 제8 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제3호(같은 법 제17조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제4호의 죄
- 바. 「근로기준법」제107조(같은 법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한다)의 죄
- 사. 「선원법」제167조제3호의 죄20)
- 아. 「장애인복지법」제86조제2항제2호의 죄

¹⁸⁾ 이와 관련 '사기'와 '기만'이 빠졌다는 지적이 있다(김태정, 2021. 2. 22). 이에 대하여 이수진 의원실은 '위계'가 '기만'보다 넓은 범위라고 반론하고 있고 더 나아가 취약한 지위의 이용보다 궁박한 상태의 이용이 국내법상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 표현과 가장 가까운 표현이라고 반론하고 있다(이수진의원실, 2021. 2. 23).

¹⁹⁾ 국가인권위원회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당시 유엔 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국내법화하면서도 그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가 형사저벌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21. 2. 8:2).

²⁰⁾ 이러한 죄들은 노동력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에 적용되는데 선원법 제167조 제3호로 처벌된 예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다고 한다. 김종철(2021. 2. 24)은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범죄를 예로 들면서 인신매매방지법상의 인신매매범죄가 실제로는 제도로 적용되지 않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 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85조제 5호의 죄
- 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죄
- 카.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4조(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죄에 한한다), 제45조 및 제48조(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의 죄에 한한다)의 죄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더구나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 식별지표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여성가족부장관은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대한 지표를 개발하여 고시하고 이를 검사, 경찰, 출입국관리 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²¹⁾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이에 기초한 피해자 확인과 지원을 신속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²²⁾

따라서 향후 여성가족부장관이 개발할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이 식별기준을 개발하면서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기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보다 현실적인 식별기준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인신매매등피해자의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제한되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포괄적이며 인신매매등범죄피해자의 경우는 비교적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고 있지만 형법상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

아울러 자발적 성매매가 처벌받는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와 피해자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다른 인신매매와 구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구별하고 있는 것도 시사적이다.23)

²¹⁾ 경찰, 검찰, 출입국관리 공무원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문화관광부 등이 특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종철. 2021. 3. 2).

²²⁾ 인신매매방지법은 제15조에서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인신매매등의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등사례판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²³⁾ 김종철(2014:44-45)은 장기탈취, 강제노동, 노예상태의 목적으로 하는 사람의 이동은 바로 비자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 인신매매가 성립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사람을 이동 시키는 경우에 반드시 수단의 불법성이 있어야 인신매매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V. 나가며

지금까지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기준을 국가인권위원회와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 권고한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는 비록 우리 사회의 현실을 고려했다고는 하나 주로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등을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 형법의 인신매매죄 규정과는 크게 차이 난다. 따라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하여 미국의 경우 자국법을 반영한 식별 도구를 피해자 유형별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식별 도구를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인신매 대 지표를 활용하고 있고 이러한 지표와 도구를 활용하는 절차도 잘 정비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현행법에 부합하는 식별지표를 수립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성매매처벌법과 시행예정인 인신매매방지법상의 규정들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의 규정들이 장담점이 있기에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제대로 된 식별기준을 도입하더라도 인신매매피해자를 식별하여 보호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인신매매 피해자는 지속적인 강요 내지 협박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에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며 단속시를 대비하여 답변을 연습 당하기도 한다(김은경, 2002:195).

더구나 단속 및 수사 이후에도 피해자 식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6년 태국 여성이 마사지만 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한국에와 마사지업소에서 테스트 명목으로 위력에 의한 강간을 당하고 성매매를 하게 된 사안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형법상 인신매매죄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관련 모집책, 브로커, 인수·인계받은 모든 연계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검찰은 성매매 강요 및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만 기소하였고, 법원은 업주를 오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만 처벌하고 성매매 강요는 물론 성매매알선도 인정하지 않았다(이소아, 2021. 2. 25).

그러나 성매매와 관련 경찰의 단속 및 수사실무가 변화하고 있어 지표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경기남부청은 기업형 성매매조직을 적발하면서 성매매 남성 등도 수사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성매수남 전담 수사팀'까지 신설하였다(경인일보, 2021. 12. 6). 이는 성판매자에 대한 단속으로 시작하여 알선자 검거에 그쳤던 수사가 새로운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향후 이러한 단속 및 수사에서는 보다 쉽게 성매매피해자가 식별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기준의 개발은 다양한 효과를 낳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매매피해 자 관련 기준은 일차적으로는 성매매피해자가 피의자로서 조사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이를 활용한 성매매피해자 조사모델 개발은 물론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연계 및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박찬걸, 2014:177).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은경(2002).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서울: 한국형사정 책연구워.
- 김종철·최민영(2012). 인신매매 방지 및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제화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윤덕경·장미혜·박선영(2013). 성착취적 국제 인신매매 피해관련 법·제도 및 대책 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국(2015). 절제의 형법학 제2판. 서울: 박영사.
- 김종철(2014). "신안 염전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인신매매 특별법제정의 필요 성". 인권과 정의. 444호. 40-53.
- 박찬걸(2012).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 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317-357.
- ____(2014).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175-204.
- ____(2021). "호텔·유흥비자(E-6-2) 소지 외국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의 합리 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33권 제2호. 151-181.
- 이덕인(2008). "자발적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 제20권 제1호. 153-186.
- 정도희(2019). "이주와 법률 -인신매매 개념과 입법 방향-". **법학연구**. 제60권 제 1호. 219-247.
- 국가인권위원회(2016. 6. 20).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______(2016a).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지표」 활용 권고.
 _____(2021a).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2021b). "추락사고로 입원 중인 이주여성에 대한 과도한 조사와
- 인신매매 식별절차 미준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국회(2021. 3. 17). "여가위 법안소위, 「인신매매방지법안」의결". 보도자료. 외교부: https://www.mofa.go.kr/www/wpge/m 3835/contents.do에서

2022. 1. 3. 인출.

- 차인순(2021.2).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여성가족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 ____(2021. 4).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인신매매방지법' 제 정". 국회보 제653호.
- 제16대 국회 제240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 경인일보(2021. 12. 6). "성매수 남성 잡아낸다…전담팀 꾸리는 경기남부청". 경인일보(http://m.kyeongin.com/view.php?key=202112050100007 04에서 2022. 6. 15 인출).
- 김종철(2021. 2. 24). "욕설, 폭행, 착취에도...그들은 배 안을 벗어날 수 없었다.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신매매 현실".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2721793에서 2022. 6. 15 인출).
- ____(2021. 3.2). "피해자를 가해자 품으로...'인신매매'에 연루된 정부기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2723310에서 2022. 6. 15 인출).
- 김태정(2021. 2. 22). "이수진 의원의 '인신매매특별법', 실망스럽습니다". 오마이 뉴스(https://news.v.daum.net/v/20210222183000373에서 2022. 6. 15 인출).
- 이소아(2021. 2. 25). "인신매매에 감금까지 당했는데...그녀는 피의자가 됐다"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2722183에서 2022. 6. 15 인출).
- 이수진 의원실(2021. 2. 23). "[반론]인신매매특별법, 사각지대 놓인 피해자 위해 필요하다".
 -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 x?CNTN_CD=A0002721636에서 2022. 6. 15 인출).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판결.

【외국문헌】

木村光江(2006). "トラフィッキングの実態と対策". 都立大法学会雑誌 46巻 2号.

HHS(2018). Adult Human Trafficking Screening Tool and Guide.

Abstract

Redesign of Tool for Screen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Chang, Eung Hyeok* Cheong, Jin Seong**

On April 12, 2021, the NHRCK pointed out that the police investigation against a migrant woman who got a severe injury in a course of crackdown on sex trafficking is a violation of human rights. It was further suggested that the woman could be a victim of human trafficking. Thus, the Police Commissioner was advised to prepare for a sophisticated tool for screening victims of human trafficking.

In fact, the NHRCK developed an 'Index on Identification and Protection of Human Trafficking Victims' in 2016, recommending that government officials and professionals including the Police Commissioner need to take advantage of the index. However, it does not reflect the current clause on human trafficking of the criminal law,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officials to follow the index. Furthermore, the current clause on human trafficking of the criminal law itself has a limitation of not fully reflec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UN.

On the contrary, diverse federal and local agencies of the U.S. government has developed Human Trafficking Screening Tools reflecting the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which includes systematic indicators of various types of trafficking victims and is being used as a guidance for effectively finding and protecting the victim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evelop systematic screening criteria for trafficking victims, based not only on the criminal law but also on such laws as 「Anti-Prostitution Act」 and 「Anti-Human Trafficking and Victims Protection Act」. One notable issue is that the various regulations have pros and cons and, in particular, the fact that sex trafficking in Korea could be prosecuted needs to be further considered.

Keywords: human trafficking, prostitution, victim, tool for screening, human trafficking prevention act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Keimyung Univ.(jjang160@kmu.ac.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oon Chun Hyang Univ.(cjs2047@sch.ac.kr)